

# 법무사 입문하기

Learning Guide Book

# D1

## 법무사란 무엇인가?

### ■ 법무사란?

종전의 사법서사를 개칭한 것으로 法曹의 一員으로서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법률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그 업무범위도 대폭 확대되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제출대행 외에 법원·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와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출대행과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이다.

단순히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기계적인 업무만이 아니라 소액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준비서면, 조정신청, 독촉사건, 비송사건의 신청, 고소·고발장 작성 등의 업무는 법무사에게 금지와 보람을 안겨 주는 매력있는 전문직 업무로 볼 수 있다.

### ■ 법무사의 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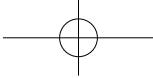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시험합격자의 일부는 기존 법무사 사무소에 고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합격자의 대부분은 개인사무소 및 합동적인 사무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 ■ 법무사 마크



법무사는 국민의 법률문제를 신속정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 결의 친근한 법률조력자입니다.





## ■ 법무사의 주요업무

### ◎ 법원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 가압류, 가처분 및 집행사건의 신청서
- 상소장 및 그 이유서
- 가사소송심판 청구서
- 비송사건 신청서
- 독촉, 화해, 공시최고 등의 신청서
- 공탁신청서
- 형사고소, 고발장
- 고소 취소장
- 진정서, 탄원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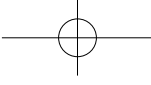
### ◎ 법원과 검찰청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장래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하거나 당사자 간의 법률훈계를 확정하는 각종의 계약서, 합의서
- 소송의 준비를 위하여 작성하는 채무이행 최고서, 통지서
- 검찰 이외의 수사기간에 제출하는 형사고소, 고발장 등

### ◎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 부동산등기 신청서 (선박, 입목, 광장, 광업등기 포함)
  -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용익권·담보물권의 설정·처분등기, 각종 말소·변경, 기타 등기 (164가지)
- 상업등기 또는 법인등기 신청서
  - 회사의 설립·합병·조직등기, 자본증가·감소등기, 사체발행등기, 지배인이나 이사등의 선임·종임등기 (65가지)

법률자문 및 상담	개인의 법률생활, 개인사업자·법인 등의 법적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등기 분야	부동산관련 등기, 회사관련 등기 등 등기업무 전반
소송 분야	민사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 소송, 형사소송 등 소송관련 서류 작성
경매 분야	권리관계 분석, 경매신청, 입찰대리
민사 신청	가사, 공탁, 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 파산 분야	개인회생, 파산 상담 및 신청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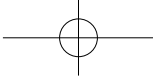
## 법무사 전망

###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사건의 작성·신청대리, 경매사건 등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및 매수신청대리를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법무사 사무소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각 법무사 사무실마다 처리하는 업무의 비중이 서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건수임수의 20~30%가 민사나 신청사건, 70~80%가 등기사건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몇 년에 걸친 부동산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등기사건은 1279만 건(2006년) → 1177만 건(2007년) → 1150만 건(2008년) → 1100만 건(2009년) → 1064만 건(2010년) → 1146만 건(2011년) → 1186만 건(2012년) → 1069만건(2013년) → 1126만건(2014년) → 1300만건 추정(2015년)식으로 계속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일부 법무사는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짧은 글을 통하여 법무사 업계의 현실과 전망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법무사 업계의 전망과 관련하여 보통 언급되는 화두는 첫째, 경기침체에 따른 등기사건의 감소, 둘째,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 업계로부터의 도전등이 있다.

**이 중 첫째 문제, 수년간 에 걸쳐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등기사건이나 법무사사건 자체가 감소하여 사무실 운영에 위기감 혹은 긴장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현상은 비단 법무사 업계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고 전문 직종 모두가 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개업하려면 적지 않은 자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타전문직의 경우에는 그 위기감이 법무사 업계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 조그만 위안이 될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말한다면 법무사 업계는 외부적인 영향을 다른 직종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이 1996년 개업 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쓰나미처럼 다가온 IMF 사태 시에도 오히려 가압류·가처분사건이 폭증하였고, 그 시점이 지나니 바로 DJ 정권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법인설립 및 관련 상업등기사건이 엄청 많아졌고, 그 다음 정권시대에는 부동산경기의 호황에 따라 소유권이전 및 담보대출사건이, 그 이후에는 생각지도 않던 개인회생·파산 사건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였던 점을 상기하기 때문이다. 법무사 업계가 100년 이상 시대의 부침에 대응하여 항상 경쟁력을 가지고 잘 적응해왔듯이 현재의 위기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활짝 웃을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자신한다.

**둘째 문제, 타전문직 특히 변호사업계로부터의 도전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해방 이후 그 동안 변호사업계는 송무위주의 법률서비스에 주로 집중하고, 법무사업계는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신청 사건 등을 주로 처리하여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로스쿨제도가 도입되고 변호사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는 변호사업계에서는 종래 법무사업무라고 치부하였던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에도 새로운 관심의 눈을 돌리게 되었고, 따라서 종래 법무사업계에서 처리하던 상기 업무의 적지 않은 부분을 다른 업종에서 뺏어가고 있는 현실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편에서 생각해본다면 1백년이 넘는 유구한 기간 동안 법무사가 처리해오던 위 등기나 보전처분, 경매사건 등이 출지에 변호사업무에 귀속되고 법무사 직역은 순식간에 직역 자체가 스스로 소멸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어제 오늘이 다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 시민의 법 감정에 맞추어, 정확·신



## Judicial Scrivener 「입문하기」

속·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던 법무사업계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생각이 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전국의 법무사들은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단일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경매전문법무사, 송무전문법무사, 상업등기전문법무사, 특수법인등기전문법무사, 개명전문법무사, 상속등기전문법무사, 개인회생전문법무사, 가압류가처분전문법무사, 가사사건전문법무사, 호적전문법무사, 비송사건전문법무사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법무사는 경쟁력을 갖추어 일반 시민에게 고품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에 추가하여 법무사 업계에서도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거론한다면 (1) 소액소송사건에 대하여 법무사가 법정대리권(변론권)을 쟁취하는 문제 (2) 출입국관리소 관련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획득하는 문제 등이 바로 그 것이다. 또한 2011. 10. 12부터 시행된 동산 및 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동산담보등기제도, 채권담보등기제도 등에 대한 법무사 업계의 기대감과, 2013. 7. 1.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 법무사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 드린다.

법무사업무의 현실이 현재 그리 밝은 것은 아니지만(모든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미래가 어두운 것은 전혀 아니다. 모두 다 노력하여 단계적으로 법무사업무의 직역을 확대하여 간다면 법무사 업계의 밝은 미래가 멀지 않아 올 것이다. 그 밝은 미래는 실력과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젊은 법무사의 몫이다.

〈필자 : 유석주 법무사〉

# 03

## 법무사 시험제도

### ■ 시험 실시기관은?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 선발예정인원?

- 일반응시자 : 120명(2015년 기준)

### ■ 시험과목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 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 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 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 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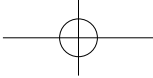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임.

###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제3차 시험 : 구술시험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정함)

### ■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최종합격자(120명, 2012년 기준) 3배수인 360명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매년 시험위원회에서 합격자 인원을 결정한다.



## ■ 시험시간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1교시	10:00~11:40 (시간연장 장애인 10:00~12:00)	제1과목(헌법, 상법)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교시	14:00~15:40 (시간연장 장애인 14:00~16:00)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 시험시행 일정 및 공고방법

구분	시행일정	공고방법	
제1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6월 초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시험일자	매년 6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8월 초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제2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8월 초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9월 중순(금,토 양일)	
	합격자 발표	매년 11월 말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에 공고
제3차시험	장소공고	매년 11월 말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
	시험일자	매년 1월 말	
	합격자 발표	매년 2월 초	관보 및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개별통지

〈2015년 시험기준〉

## ■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 (<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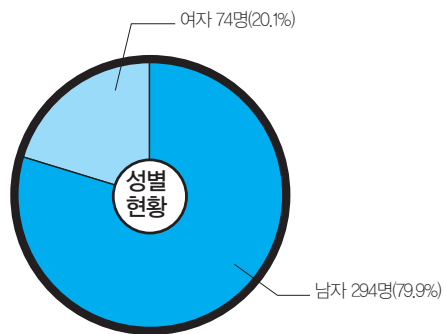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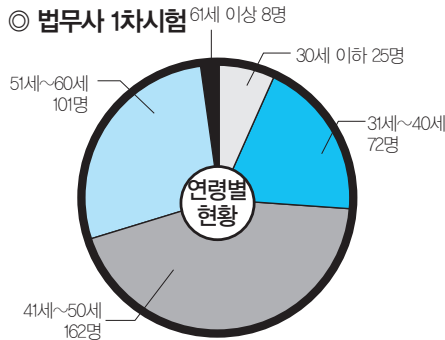
## 법무사 합격자 통계

### 합격자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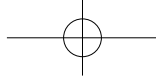
연도(회수)	출원인원	1차 합격인원	1차 커트라인	2차 합격인원	2차 커트라인
92년(1회)	8,259명	311명	65.5	59명	56.77
94년(2회)	4,438명	301명	71.5	60명	56.70
96년(3회)	3,272명	421명	70	80명	57.75
98년(4회)	6,622명	127명	73.5	30명	61.41
99년(5회)	9,229명	154명	80.5	52명	52.50
00년(6회)	8,044명	248명	83	80명	54.70
01년(7회)	6,706명	312명	84	101명	57.25
02년(8회)	6,697명	307명	85.5	100명	51.68
03년(9회)	6,633명	318명	85	100명	53.375
04년(10회)	6,588명	388명	86	121명	54.125
05년(11회)	5,602명	365명	83	122명	51.375
06년(12회)	5,158명	373명	77.5	123명	53.00
07년(13회)	4,811명	386명	-	121명	53.00
08년(14회)	4,340명	364명	73.5	120명	41.813
09년(15회)	4,266명	382명	72.5	120명	55.587
10년(16회)	4,100명	365명	75.0	121명	63.375
11년(17회)	3,798명	370명	73.0	121명	53.313
12년(18회)	3,511명	373명	71.5	121명	53.625
13년(19회)	3,226명	371명	69.5	120명	53.225
14년(20회)	3,333명	362명	67	122명	53.938
15년(21회)	3,261명	368명	60.5	121명	52.90

### 2015년 제21회 합격자 현황

◎ 법무사 1차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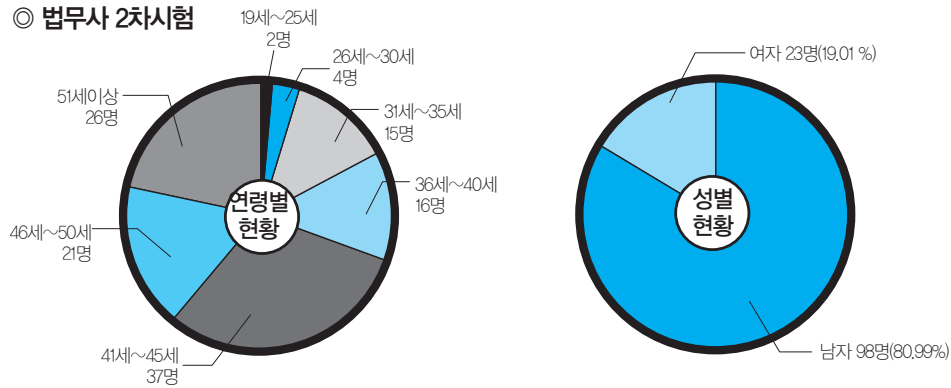




◎ 1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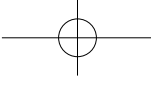
제1과목	헌법 · 상법	62,722
제2과목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8,728
제3과목	민사집행법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65,608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공탁법	69,630
전 과목 평균		66,672

◎ 법무사 2차시험



◎ 2차 과목별 합격자 평균점수 현황 (2015년 기준)

제1과목	민법	50,37
제2과목	형법 · 형사소송법	53,32
제3과목	민사소송법 ·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63,15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62,74
전 과목 평균		57,40



# 05

## 법무사 단계별 학습전략

### ■ 시험 준비 단계

#### ◎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의 파악

사전준비 없이 막연한 판단으로 법무사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 방법으로서 법무사 시험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

기출문제의 꼼꼼한 분석을 통해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제빈도 및 경향을 정확히 가늠해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법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첫 걸음이다.

#### ◎ 수험대책의 구체적 설정 및 교재의 선택

시험 출제수준 및 경향을 꼼꼼히 파악했다면, 본인에게 적합한 수험방식을 선택 해야한다. -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수험방식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몇 배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학습량과 시간배분 및 학습장소, 학원강의 등 적절히 선택해야한다. 학습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적의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용이 충실한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이해력을 높이고 법무사시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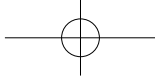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 실력 쌓기 단계

#### ◎ 각 과목별 학습시간의 적절한 배분

과목별 내용은 초보자가 처음 접하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므로, 과목별 학습목표량과 학습시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요약서 또는 실전모의고사 등의 순서로 전체일정에 따라 학습하면 빠른시일 내 효과적으로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다.

#### ◎ 전문학원 강의 수강

시험과목의 대부분이 법률과목이어서 각 과목의 기본개념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독학은 해당 과목의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기보다는 평면적인 단순암기식 학습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학습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독학의 결점이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법무사시험 전문학원의 강의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



## ■ 실력 점검 단계

### ◎ 절대 소홀할 수 없는 취약과목

수험생 스스로 사전 자기평가를 통하여 고득점 목표로 집중학습 전략과목을 정하는 것과 취약과목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과락'에 해당되면 전체 평균점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합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 정확한 지식의 우선적 습득 및 객관식 시험요령의 파악

각 과목별 특성 파악을 통한 전체적인 이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릇된 지식은 수험공부에 있어 혼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수험생활에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단계에서 지식의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제차 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집을 통한 실력점검 및 객관식 문제풀이 요령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 ■ 최종 마무리 단계

### ◎ 합격을 좌우하는 2개월 전 마무리 학습

42.195km, 마라톤의 완주거리이다. 법무사시험 2개월 전은 이 마라톤 코스 중 35km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라톤 코스 중 인간이 신체적인 극한에 달하는 지점이자 수험생이 가장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지점이다. 또한 바로 이곳이 수험생활에 있어 마지막 승부가 가능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시험 2개월 전부터는 최대한 정신력을 집중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한다. 이때의 학습효과는 지난 몇 개월 간의 학습가치와 맞먹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부해 온 것을 법무사시험장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암기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외우고, 문제집이 나 요약서, 실전모의고사 등 마무리 교재를 통해 실전감각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

시험 당일 최고의 컨디션으로 실전에 임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들, 자신의 두뇌에 갈무리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향상화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전날 무리하게 공부에만 열중할 경우, 정작 법무사시험 당일 컨디션을 저하시켜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충분한 숙면은 법무사시험 당일 명석한 분석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